

제 2주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충남의 대응과제

- 김정연 박사(충남발전연구원)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충남의 대응과제

2013. 08. 12

김정연 (수석연구위원)

CDI 충남발전연구원

발표내용

1. 도시재생 관련 정책동향

2. 도시재생법의 주요내용

3. 도시재생 추진체계

4. 도시재생 계획체계

5. 도시재생법의 공공지원

6.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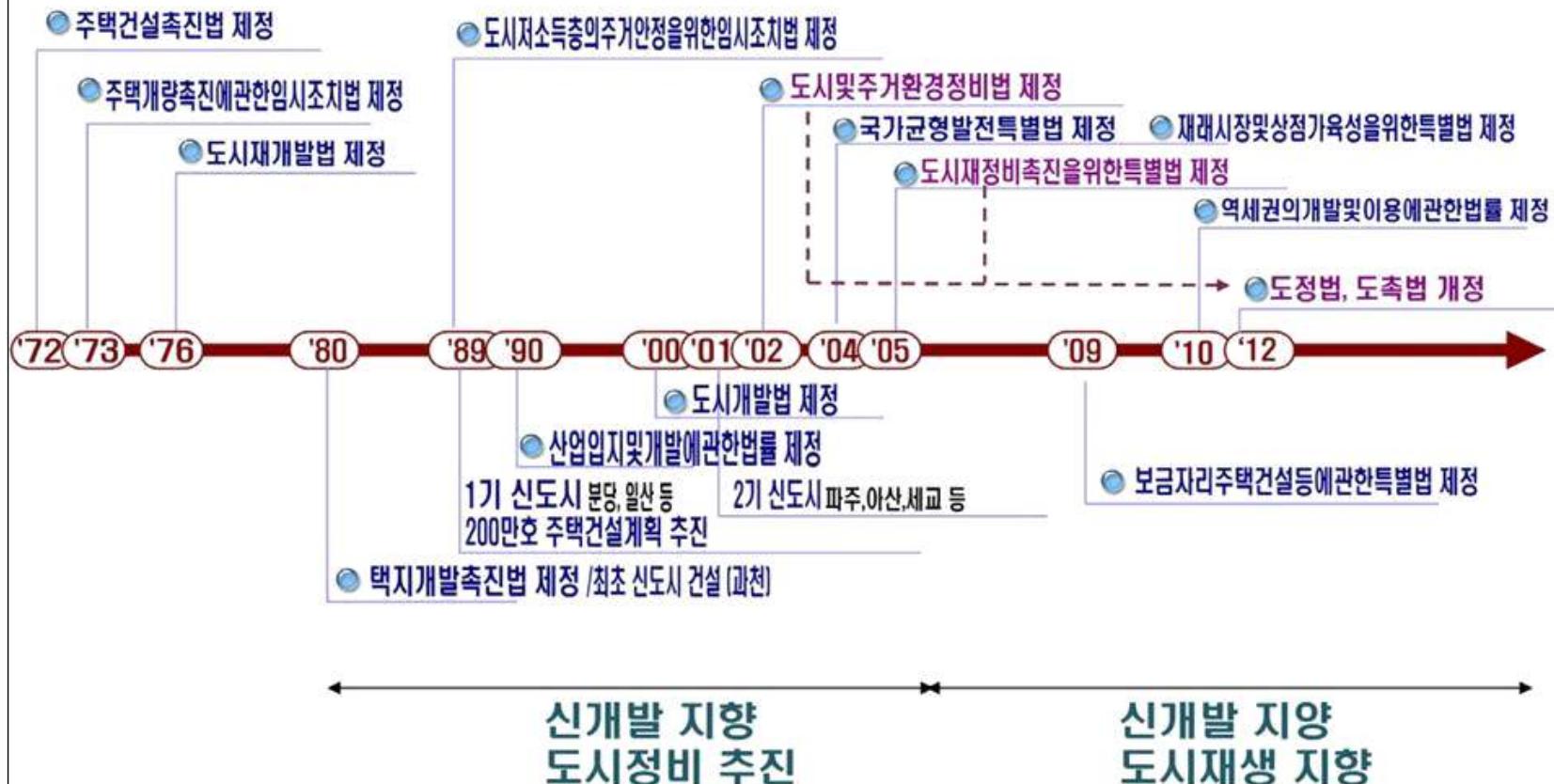
•도시재생법 관련내용은 도시재생사업단 이영은 박사(총괄과제팀장)의 발표내용(“도시재생법의 주요내용”, 제1회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3. 5. 20)을 토대로 함

1. 도시재생 관련 정책동향

01 도시재생관련 정책동향

4 쪽

한국의 도시개발 관련 사업법의 변천



도시재생법의 제정 배경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법체제의 난립

- 양적 공급 확대에 치중한 주택공급정책에 의해 종합적 도시정책 상실
 - 주택의 대량, 신규 공급에 치우친 신개발/재개발 시스템 운영
- 단위사업 목표 중심의 법 체제로 종합적 도시재생 실현 불가
 - 도정법, 도축법, 역세권개발법, 전통시장법 등에 의한 개별 사업이 단절적으로 진행

수익성에 의존한 사업 절차법

- 수익성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로 공공의 역할 최소화, 수도권에 집중적인 지구 지정
 - 원주민 배제, 경제불황기가 도래하자 지방도시 사업 추진 어려움
- 공공시행 비율 : 재건축 1.1%[6/562지구], 재개발 2.3%[11/474지구]
- 뉴타운사업은 총 76개지구 중 수도권에 55개지구(72.4%) 지정

물리적 환경정비에 치중

- 재개발 · 재건축 등 전면철거를 통한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
 - 지역 커뮤니티 붕괴, 사회 · 문화적 기반시설 부족
- 아파트 위주의 건설방식 → 도시경관 획일화, 도시 매력도 저하
 - 아파트 건설비율(%): 1.7(69), 15.5(79), 42.1(89), 64.6(99), 74.6(05)

01 도시재생관련 정책동향

6 쪽

기존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비교

기존도시정비사업

- 과정생략
- 전면철거후 재개발
- 고층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

- 개발이익
- 투기성 자본
- 공급우선주의/과잉공급

- 기존 커뮤니티 파괴
- 사람의 성장이 아닌 교체
- 지역리더 활성화 어려움



도시재생사업

- 지자체 스스로 재생 전략 구상
- 갈등 조율 및 관리
- 체계적 모니터링/평가

- 범부처 차원의 특별위원회
- 도시재생지원기구
- 도시재생지원센터

- 도시경제 활성화/공동체 활성화
- 자력재생 기반 구축으로 활성화 지속
- 지역리더 활성화



2. 도시재생법의 주요내용

02 도시재생법의 주요내용

도시재생의 목적 (제1조)

도시의 경제 · 사회 ·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도시재생의 정의 (제2조 제1항 제1호)

“도시재생” 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 사회, 물리,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권자 (제2조 제1항 제4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

02 도시재생법의 주요내용

9 쪽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제2조 제1항 제6호)

도시경제기반형

핵심
사업

근린재생형

• 도시경제기반형 (core Project+programs)

- 대상지 : 도시기반산업이 무너지면서 특히 도시전반으로 쇠퇴가 확산, 심화되는 지역
- 목적 : 도시에 새로운 기능 부여, 고용기반 창출
- 내용 :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다양한 도시재생활동의 연계
- 형태 : 도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사업 + 재생효과를 주변으로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 근린재생형 (Neighbourhood renewal projects + program)

- 대상지 : 전반적 경제 수준이 정체 또는 쇠퇴하면서 특히 근린의 국부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
- 목적 :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내부 경제 순환, 주민간 교류 증진, 일자리 창출
- 내용 :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02 도시재생법의 주요내용

10 쪽

도시재생사업 (제2조 제1항 제7호)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사업
 - 가.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다.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
 -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재생사업
 - 사.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 자. 「국계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지정에 따른 사업
 - 차.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 카.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 이 법은 활성화지역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은 각각의 해당사업 관계 법률에 따름

02 도시재생법의 주요내용

11 쪽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

(시행령(안) 제 2조 -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7호 카목 관련)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
및 산업 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02 도시재생법의 주요내용

12 쪽

도시재생기반시설 (제2조 제1항 제10호)

- **국계법상 기반시설** :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광장, 공원 등 공간시설/ 수도, 전기 등 유통공급시설/ 학교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유수지 등 방재시설/ 묘지 등 보건 위생시설/ 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 **공동이용시설**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기초생활인프라 (제2조 제1항 제11호)

-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와 국가적 최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우선 지원 예정

02 도시재생법의 주요내용

13 쪽

공동이용시설 (시행령(안) 제3조)

1. 탁아소 · 어린이집 · 경로당 등 돌봄 · 사회복지 서비스시설
2. 놀이터, 마을회관 등 취미 · 학습 · 체육활동 등의 활용을 위한 시설
3. 지역사회의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마을방송국 · 마을신문사
4. 구판장 · 세탁장 · 화장실 및 수도
5.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작은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3. 도시재생 추진체계

03 도시재생 추진체계

15 쪽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국무총리 산하의 기구로 방침 등 심의 (위원장 : 국무총리)

- 도시재생기본방침, 국가지원사항이 포함된 활성화계획, 선도지역 지정 등 심의
- 국교부 소속의 도시재생기획단을 설치하여 특위의 업무 지원
: 방침작성, 계획 및 사업의 평가와 지원, 관계기관 협의, 예산협의 등

제 7조

도시재생 지원기구

중앙 도시재생 전담기구로 정부 시책 발굴 및 대행

- 조사연구, 계획 수립 지원, 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전문가 육성/파견, 센터지원, 정보체계 운영 등

제 10조

중앙

지자체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광역, 기초 지자체 단위 일의 조직)

지자체 단위의 심의 자문기구

- 지자체의 주요 시책 심의,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심의
- 일정 조건 충족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대체 가능

제 8조

전담조직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일의 조직)

지자체 단위에서 도시재생 관련 업무 총괄 조정

- 지표조사 관리, 계획 및 사업의 총괄·조정·관리·지원, 관계기관간 협업, 지역협업체제 구축·운영, 보조금 관리, 마을기업 발굴 및 추진, 사업평가 및 점검, 재원조달 관리 등

제 9조

도시재생 지원센터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일의 조직)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 실행조직

-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주민의견 조정, 지역전문가 양성,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지원

제 11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심의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 전략계획(공동수립시)
- 활성화계획(국가지원사항 포함시, 선도지역)

구성 (10~30인)

- 위원장 : 국무총리
- 정부위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 민간위원 : 위원장이 위촉

융합적

정책실현

타부처 예산의 통합 (20조 6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활성화계획의 결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도시재생기획단 설치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 기본방침 작성
- 활성화계획, 재생사업 평가, 지원
- 관계기관, 예산 협의
- 특위운영 지원
- 지원기구의 관리 및 지원

03 도시재생 추진체계

17 쪽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역할과 구성

도시재생 관련 국가 업무 대행

- 도시재생활성화 시책의 발굴
- 도시재생 제도 관련 조사, 연구
- 도시재생사업의 운영, 관리 지원

도시재생 기반역량 강화

- 지역 전문가 육성 및 파견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 전략계획,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 행정
서비스 연계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제10조)

지원기구를 설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지원기구로 지정 가능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구축(제29조)

국토교통부장관은…구축해야 한다.
- 구축, 운영, 관리를 지원기구에 위탁 가능
- 관계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장은 국토부의
정보 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사업의 시행

- 경제기반재생사업, 선도사업
- 도시기반시설사업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구성

도시재생 과제 발굴 및 계획 수립

- 전략계획, 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 주민 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 기반역량 강화

- 현장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민 의견 조정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실행조직)

구 성

사업의 시행

-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구청장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가능,
필요시 공무원 파견 가능
- 유사 조직 기 설립시 활용 가능

-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 지원
- 이해관계자간 분쟁 조정, 협의

03 도시재생 추진체계

19 쪽

지원센터의 유형

공공주도형

주민조직 1
주민조직 2

지원센터

지자체
(출자, 대행)

- 네리마구 마을만들기센터
- 수원시 마을만들기센터
- 완주 커뮤니티센터

민관협력형

주민조직

지원센터

지자체

- 세타가야구 마을만들기 공사
- 은평구 두꺼비하우징

민간주도형

주민조직

지원센터

지자체
(지원)

- 성미산 소행주
- 장수마을 동네목수

향후 과제

지원센터(거버넌스) 운영 지속성 확보

중앙의 체계적, 통합적 지원

지자체의 역할 강화

지역활동가 육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점진적 사업 방식 정착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확보

4. 도시재생 계획체계

04 도시재생 계획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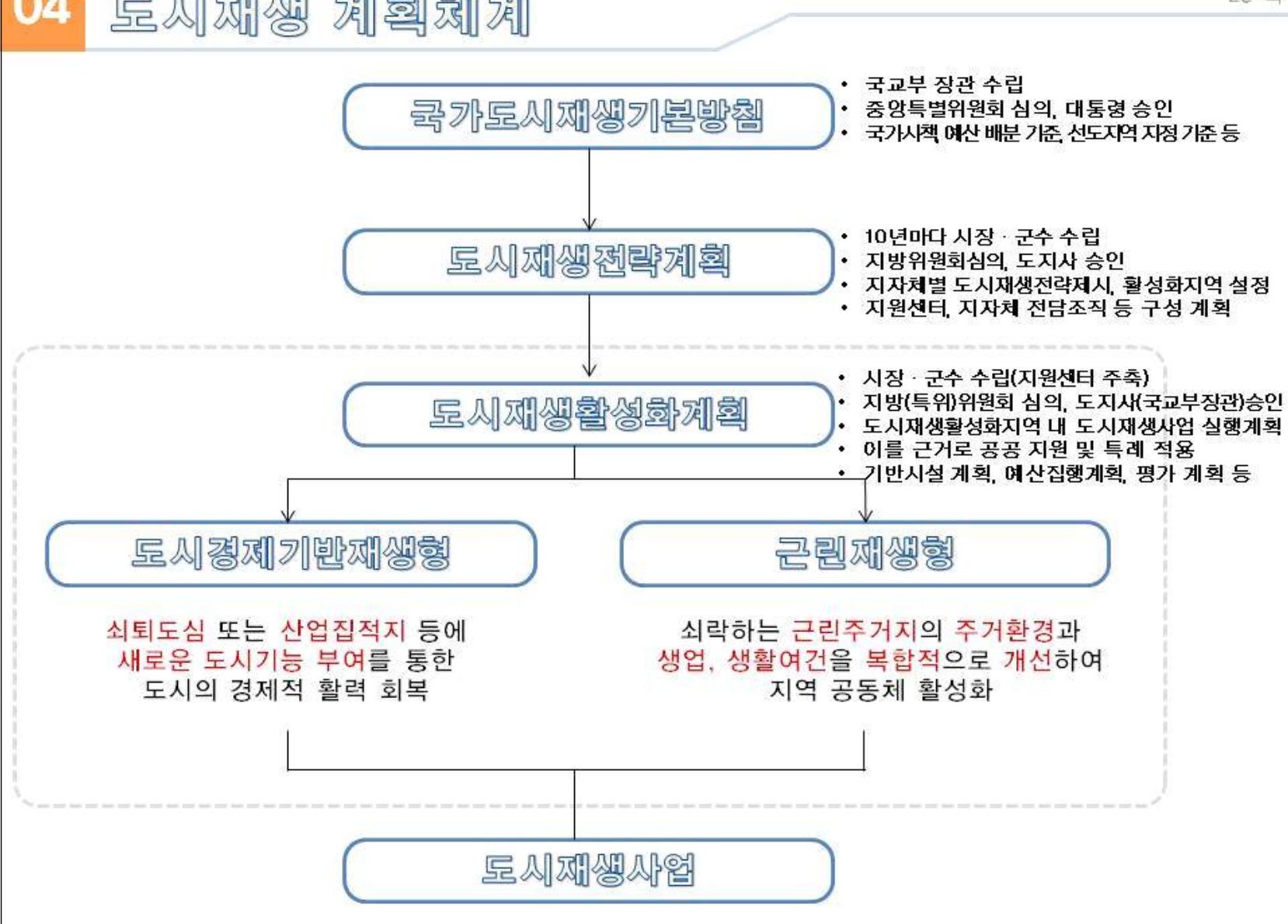
22 쪽

방침-전략계획-활성화계획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10년 단위, 국토교통부장관 수립)
 - 도시재생의 국가 목표와 주요 시책, 계획 수립 방향과 원칙
 - 예산 배분 기준, 선도지역 지정 기준 등
- **도시재생전략계획**(10년 단위, 지방위원회의, 도지사 승인 또는 광역의 확정)
 - 여건분석, 지역자산 발굴 등을 통한 해당 지자체의 도시재생 전략 제시
 - 기초조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 지자체가 재생 활동을 집중할 활성화지역 지정/변경, 지역간 연계 전략 구상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 신설 : 인구감소, 사업체수감소, 노후주택증가 등 두 개 이상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지방위원회의, 도지사 승인 또는 광역의 확정
단, 국가지원이 포함된 경우 승인 전 국교부의 결정 필요)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액션 플랜
 -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축으로 시장·군수가 수립, 이를 근거로 공공지원 및 특례 적용
 - 추진체계구성계획, 기반시설 및 공동체시설 계획,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 평가계획

04 도시재생 계획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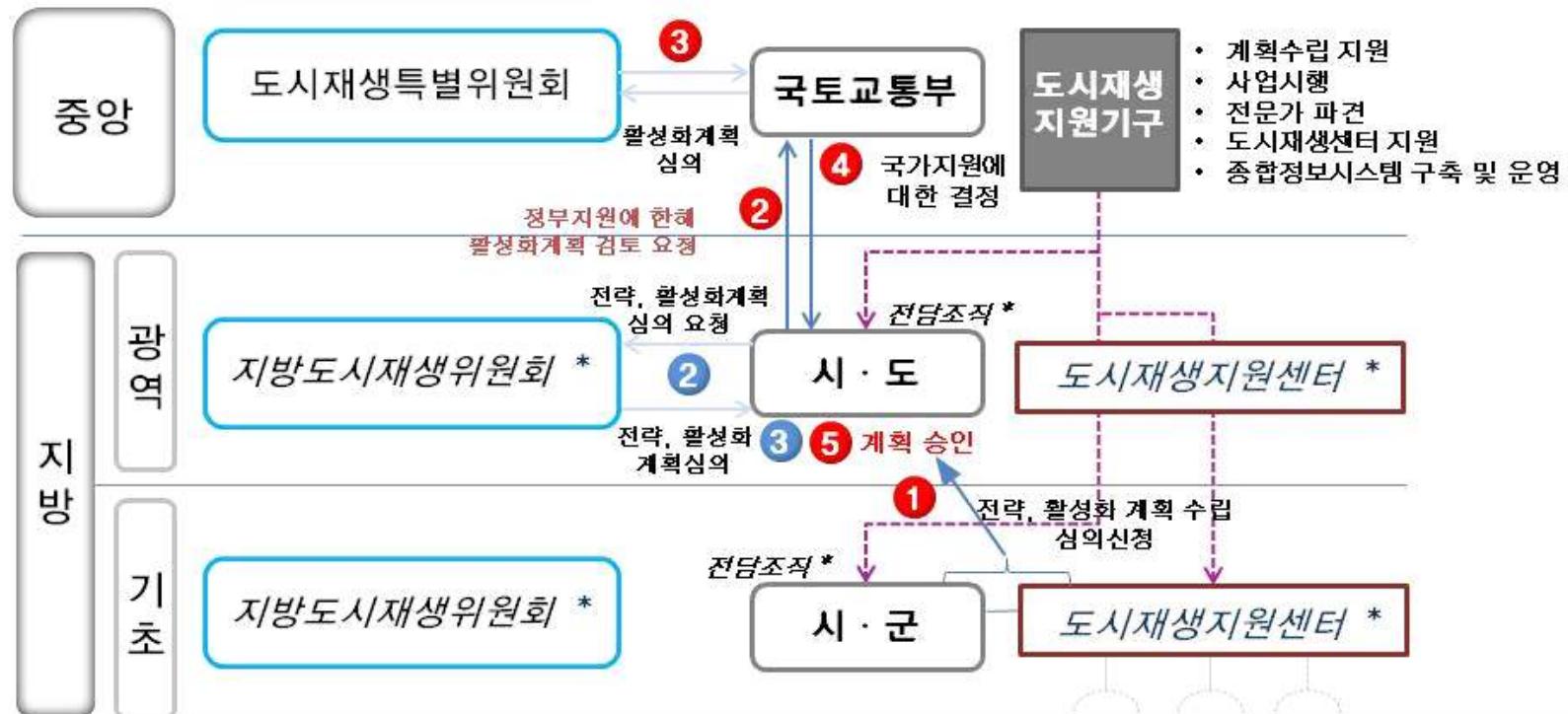
23 쪽



04 도시재생 계획체계

24 쪽

주체별 활성화계획 심의, 승인 업무



법 제 20조(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⑥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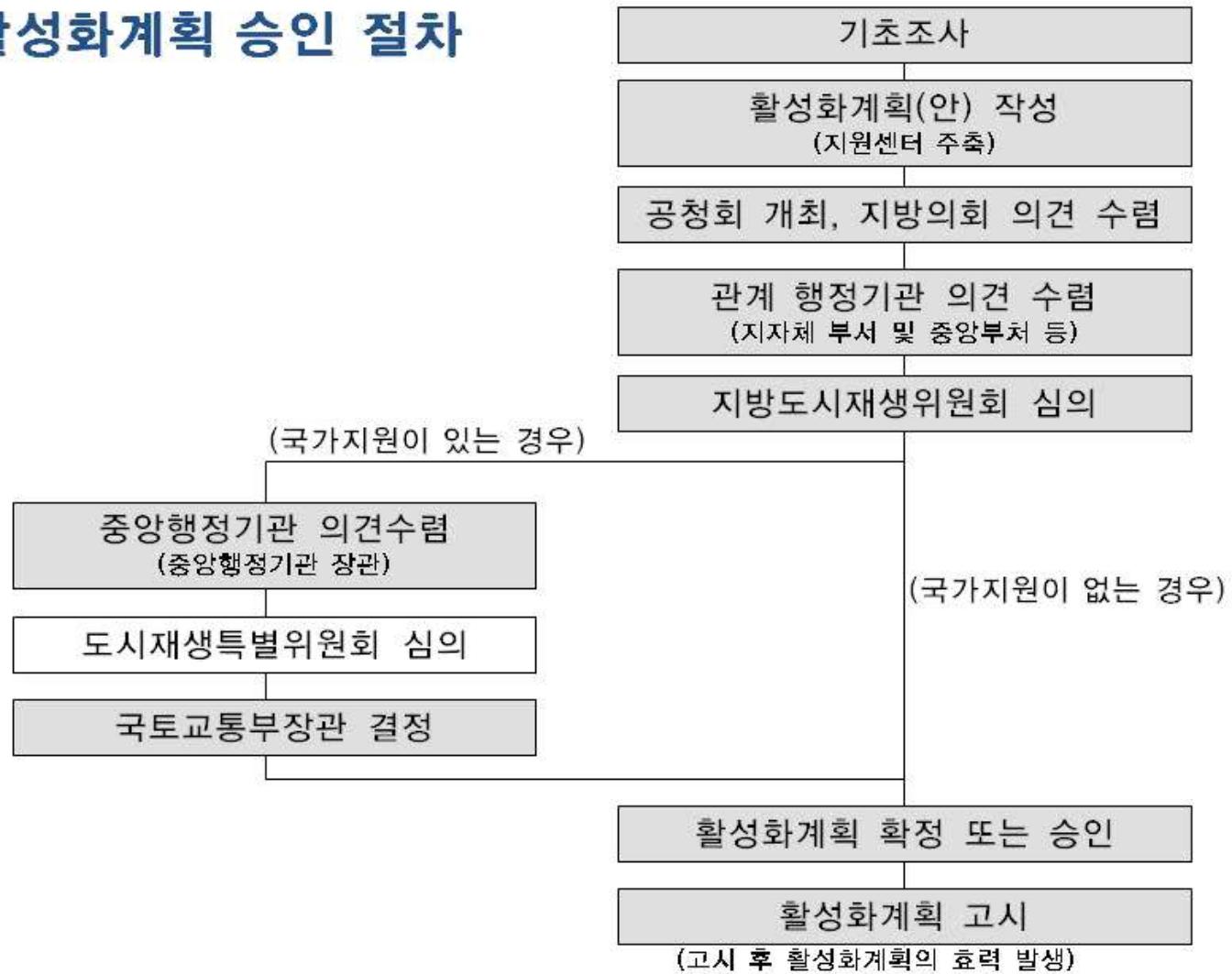
④에 의해 활성화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 이 탈락체는 선택사항(의무조직 아님)

04 도시재생 계획체계

25 쪽

활성화계획 승인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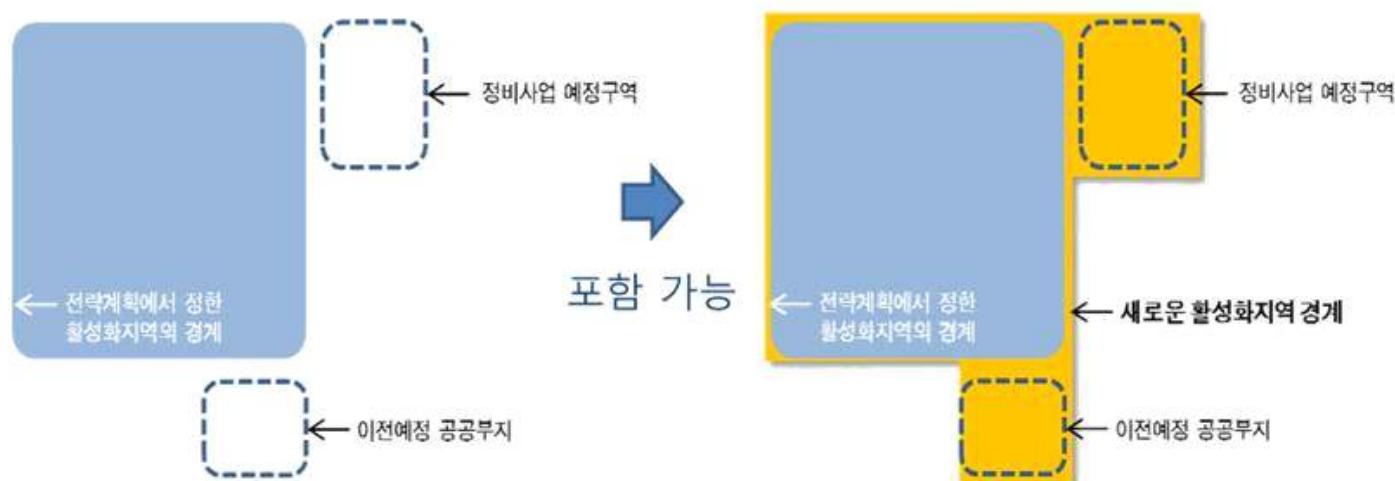


04 도시재생 계획체계

26 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기존 개발사업과의 관계 정리)

- 도시재생법은 공공의 지원을 다루는 **지원법**으로서, 구역 지정, 사업 시행 등 사업 절차를 규정하는 **기존의 정비법과 상이함**
- 도시재생법은 공간상 정비법의 대상지를 포함할 수 있지만, **해당 구역의 사업 절차는 해당 정비법에 근거하여 별도 운영**(민간조합사업에 국고 지원은 불가)
- 정비사업의 파급효과를 주변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근지역의 기반시설 정비나 구역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관리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함) 등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법을 근거로 **지원 가능**



04 도시재생 계획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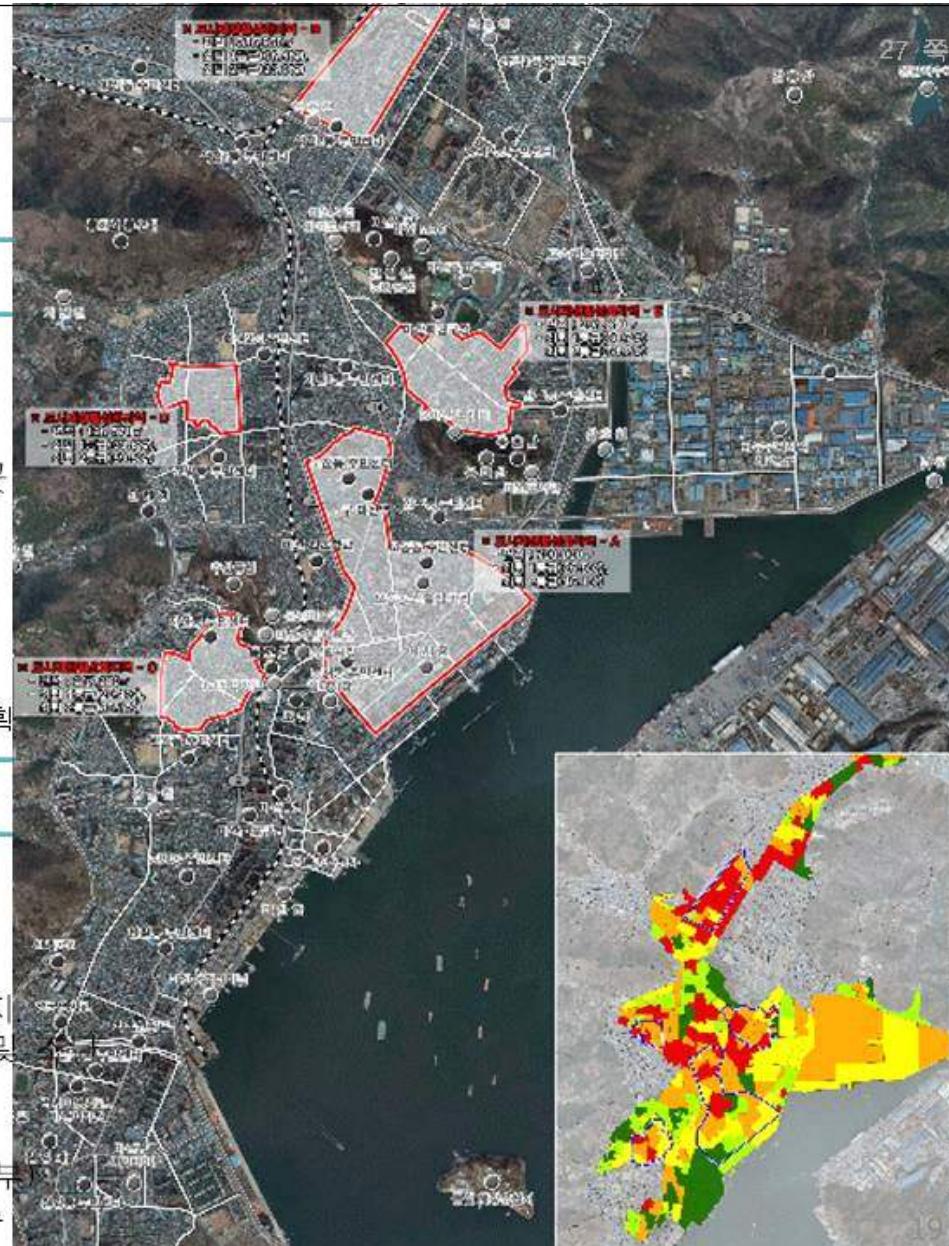
도시재생전략계획 예시

활성화지역 설정 기준

- 기존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단위의 활성화 지역 설정
- 주민 조직, 사회적 자산 등 잠재력 있는 곳
- 지역 설정을 위한 정형화 도모
 - 규모 : 하나의 집계구를 최소 단위로 하되, 주민조직 구성단위를 기본으로 설정
 - 쇠퇴 1.2 등급지역이 50% 이상 포함
 - 도로, 하천 등의 지형·지세 고려
 - 각종 개발사업 또는 지적·행정구역 등으로 구획

활성화지역 우선순위설정 기준

-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삶의질 제고 : 시기의 적절성
(시급성, 현안사업)
- 실현 가능성 : 주민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
지역자산, 재원확보 및
용이성 등
- 경쟁력 : 잠재력, 독창성
(지역의 특성 반영 여부)
- 지역격차 해소 : 형평성, 복합쇠퇴지수



전략계획상 활성화지역 재생 방향의 제시 [예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제2조(정의)

6.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

- 제 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에 관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5. 예산 집행 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7.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 21조 (활성화계획의 효력) 활성화계획이 고시되면 다음 사항이 결정, 고시 된 것으로 본다.

- 도시 · 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지구(경제기반형만) 및 기반시설 관련 계획
-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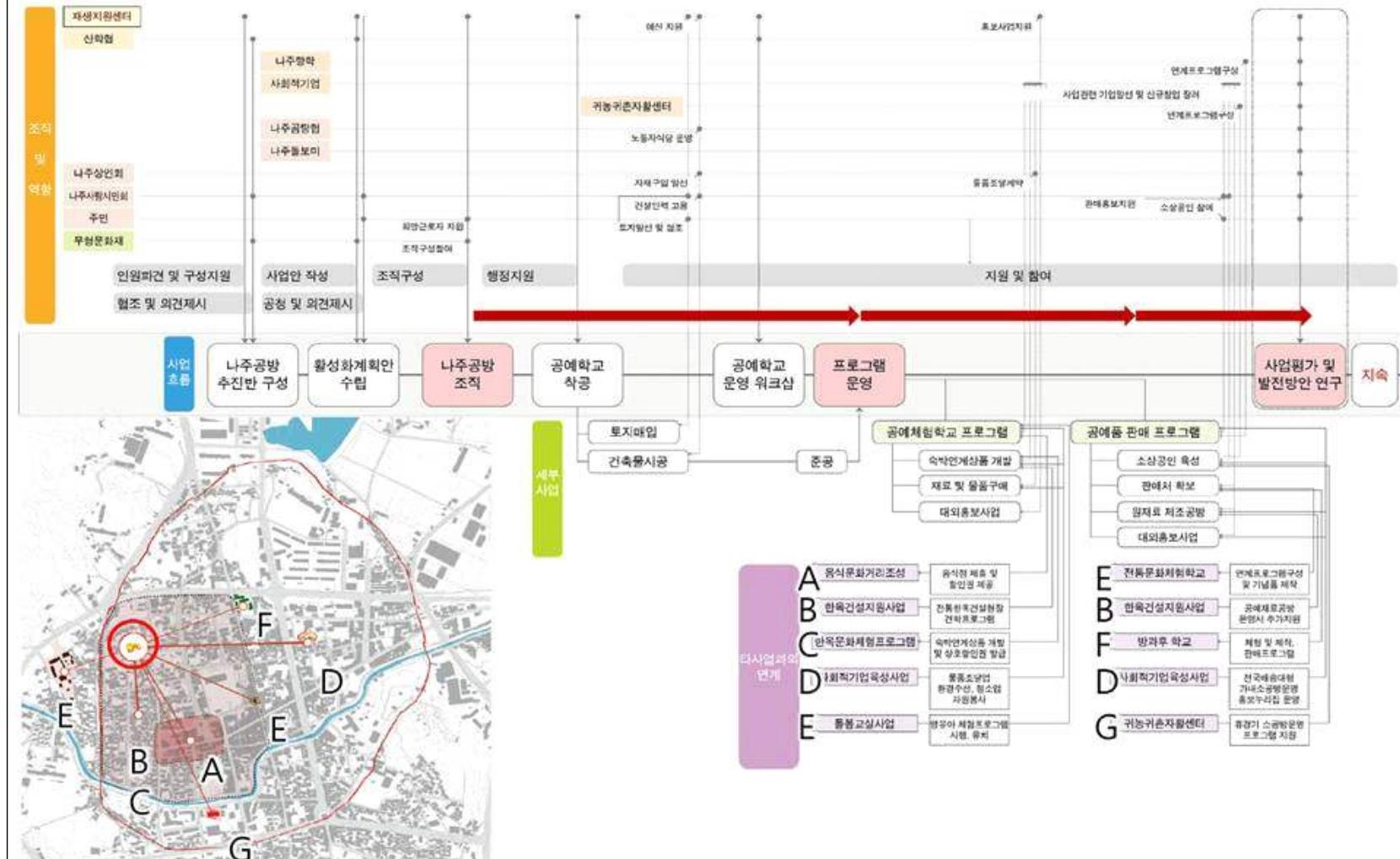
도시재생전략계획 예시 – 경제기반형(부산 북항)



04 도시재생 계획체계

31쪽

도시재생전략계획 예시 – 균린재생형(전남 나주)



5. 도시재생법의 공공지원

공공 예산 지원 (제27조, 제28조)

- 중앙은 일반회계와 광특회계로 지원 (제27조제3항)
광역과 기초지자체는 특별회계 설치 운영 가능 (제28조제1항)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3.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05 도시재생법의 공공지원

34 쪽

지원 원칙 (제27조 제2항)

- **쇠퇴도(衰退度)** 뿐 아니라 재정자립도, 거버넌스 구축 정도 등 해당 지자체가 지닌 잠재력, 활성화 사업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의 규모, 비율 등을 차등 지원
- 지역별 지원금액의 총량에 대해 상한선을 정하고(정액보조), 한도금액 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매칭비율 조정** (변동비율보조방식)

차등지원 기준 및 방법 (시행령(안) 제37조)

- ①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초과 불가
 - 재정자주도가 70퍼센트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60퍼센트
 - 재정자주도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70퍼센트
 - 재정자주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80퍼센트
- ②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전체 평가 대상 중 하위 20퍼센트 이하 : 차년도 지원 금액의 10퍼센트 이내 삭감
 - 전체 평가 대상 중 상위 20퍼센트 이상 : 그 삭감된 금액만큼 증액하여 지원 가능

05 도시재생법의 공공지원

35 쪽

예산확보 강제 (제3조)

- 국가와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지방재정법」 제 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 특별회계의 세출 (제28조 제3항)

- 조사·연구비 /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 비용 /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 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관리 비용 /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비 / 마을기업 등의 사전 기획 및 운영비 / 공공 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 비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활성화지역내 국공유재산 등의 처분 (제28조 제3항)

- 활성화계획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이 포함될 경우 미리 관리청(기재부 또는 국교부)과 협의해야 하며 관리청은 2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함
-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임대 또는 양여 가능**

05 도시재생법의 공공지원

재생사업 시행자의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제3조)

-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감면 가능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토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의 감면이나 미부과 가능
(건축물에 대해서는 광역의 승인이 있는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감면 가능)

건축규제 완화 특례 (제32조)

- 국계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용적률 규제 완화
- 주택법 및 주차장법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 건축법에 따라 조례로 정한 높이 제한 완화

선도지역 지정과 특별조치 (제33조, 제34조)

-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사업의 파급효과가 높은 경우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략계획권자의 수립 요청에 따라 지정 가능
 -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전략계획 없이 활성화계획 수립 가능, 예산과 인력 우선 지원,
국가는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 부담

6.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기본방향(1) : 적실한 목표와 지표의 설정,
기초조사



- 미래상을 목표로 제시
- 정량적 수치를 목표로 제시
- 핵심과제를 목표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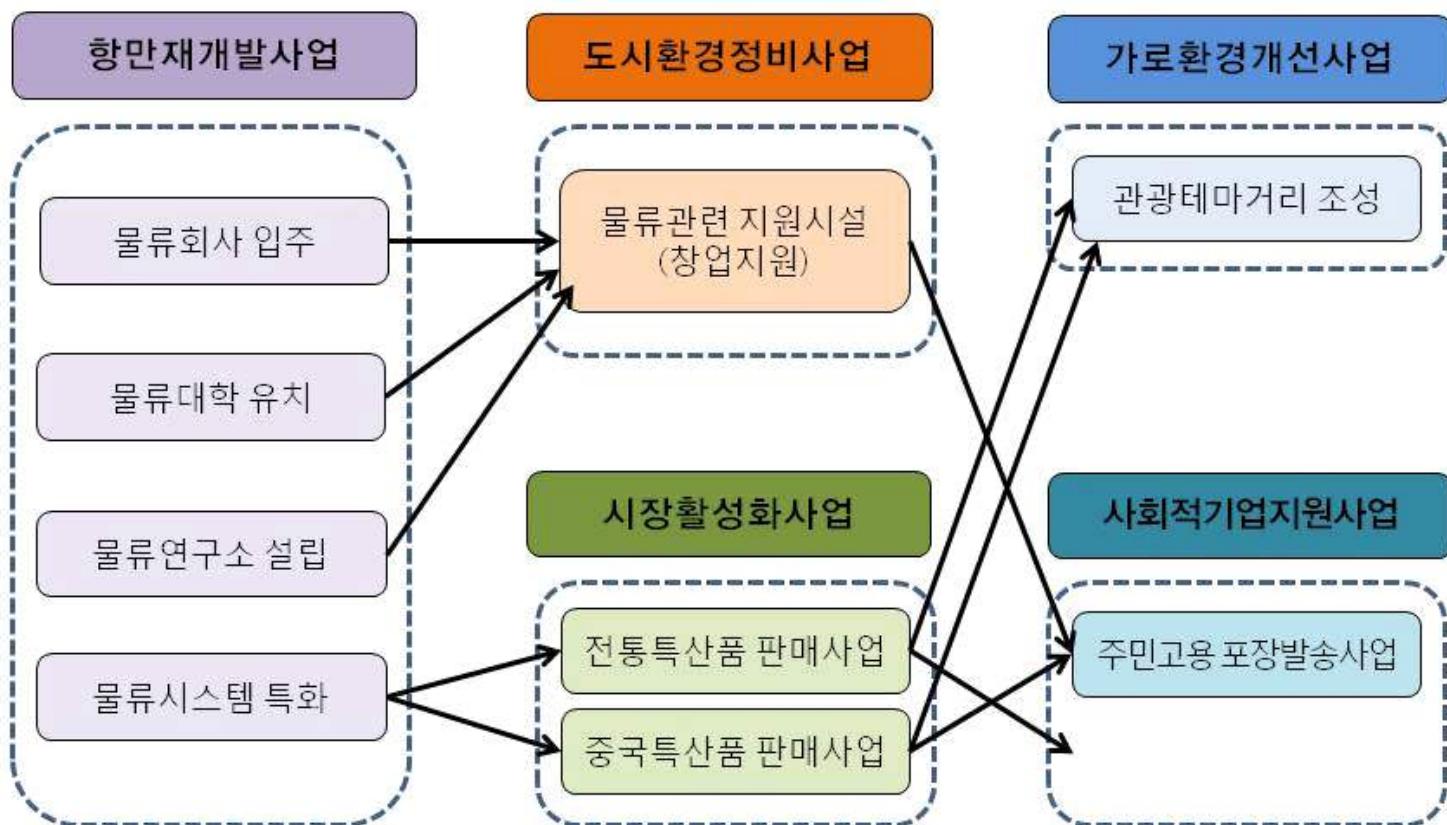
- 도시재생 테마별 구분
- 정량적/정성적 지표의 구분
- 목표지표 선정사유를 명확하게 설명

-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조사실시
- 목표 및 전략에 따라 차별화된 항목 조사

06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39 쪽

기본방향(2) : 연계·융합 (예시)



기본방향(3) : 균현재생 중심의
사업발굴

도시재생사업

기초생활
인프라
지원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골목상권
살리기
사업

커뮤니티
지원사업

- 공동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 도로, 상하수도시설, 교량, 주차장 등의 사업 포함 가능

- 노후주거지 정비 사업
- 골목, 공지, 조경 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재개발, 재건축사업, 담장허물기 등

- 자영업자, 소규모 점포, 전통상가 등의 자생력 강화사업
-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 점포주의 경영개선,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마을기업 육성사업
- 협동조합 육성사업
- 마을공동체 모임지원
- 문화예술 및 역사자원 보전사업
- 마을학교 운영
- 마을공동체 조사연구

06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41쪽

기본방향(4) : 주체역량 구축과 단계적 추진



06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42 쪽

기본방향(5) :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일

1. 도시재생 인식전환 및 전담 부서 조직 · 운영(도시재생센터 or T/F)

도시재생은 하드웨어(인프라)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아닌 도시활력 및 매력을 창출하기 위해 주민에 의한 상향식(Bottom-up)방식에 의해 과정을 중시

단기간 국고보조사업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역량강화가 중요

2. 전담기구의 구성 · 운영(센터/ TF/포럼) 및 군내 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지원센터 역할 : 전문가참여 유도, 상담창구 및 지원체계 조직 · 운영
주민 대상 재생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
전략계획 · 활성화계획 수립 및 제반 사항 지원
사업 참여주체간 의견조정을 위한 중간자 역할 수행
마을기업(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지원 · 운영
주민 자력 재생을 위한 컨설팅

관련단체 : 지역순환경제센터, 사회적기업, 평생학습, 일자리센터, 주민자치센터,
상공인센터, 귀농 · 귀촌센터, 도농교류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3. 사회적 합의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활성화계획 수립

각 단계별 주민참여 및 협의에 의한 기초조사(도시환경, 도시잠재력), 활성화지역 설정,
기본구상, 재생방향 설정 등 계획 수립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